

#### 5년 전 저의 이야기

-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개발자 (C 언어)
- 오픈소스 문외한 (FUSE, Disclaimer 등)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어렴풋이 이 해
- 라이선스 검증 업무 담당
- 자료는 넘쳐나지만 심금을 울리는 자료는 없음
- 아놔~ 법이래~ㅜㅜ



虎視牛步(ideally), but 牛視牛步(actually)

• 포기할 것인가? 파고 들어가볼 것인가?

## Q) 여러분, 이 용어들이 첨부터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 오픈소스 거버넌스
- 오픈소스 라이선스
- 특허보복조항
- 라이선스 경계
- 라이선스 양립성
- 준거법



#### Legal SG의 목적 및 방향

#### • 목적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세부 이슈 및 대응 방안
- ▶법과 기술의 경계? V. 법과 기술 모두 포함?
- ▶오픈소스 관련 소송 및 라이선스 분석을 통한 지식 공유

#### • 개최 주기

- ▶짝수월 둘째주 수요일 (오프라인, ETRI 서울사무소)
- 방향
  - ▶집단지성의 힘
  - ➤Don't be shy!

## Legal SG의 활동 이력

- 2023.6.22 정기회의에서 Legal SG 결성 논의
- 2023.9.19 제1차 회의
  - ▶ Legal SG 운영 방식 소개
- 2023.12.13 제2차 회의
  - ▶(소송사례) Stability AI 집단 소송-Motion to Dismiss(LG전자 박원재)
  - ▶(주제발표) GPL-2.0: 라이선스 경계 문제와 컴플라이언스(ETRI 박정숙)
- 2024.2.14 제3차 회의
  - ▶(소송사례) GPL-violations.org는 어떤 사항들을 문제삼았나?(안랩 김강보)
  - ▶ (주제발표) GPL의 발전: GPL-3.0, AGPL-3.0(ETRI 엄숭광)
  - ▶기타: CMM, Vizio 판결 분석, 중국의 저작권 침해 판결, 컴플라이언스의 도전 이슈 등
- 2024.4.17 제4차 회의
  - ▶ (소송사례) Entr'ouvert v. Orange 소송 결과(SK 조정년)
  - ▶(주제발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보복조항(NHN 박명헌)

#### 중간 평가

- 참석자 만족도 높음!
  - ▶특히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선호도 높음
- 최신 동향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LF 프로젝트들에 대한 follow-up 중 요
  - ▶시간 부족
  - ▶해결방안 모색 필요





No	주제	주요 논의내용
1	Stability AI 집단소송: Motion to Dismiss Sarah Andersen et al v. Stability AI et al	<ul> <li>원고의 집단 소송 → 피고의 소 각하 청구 → 수정 제출 → 법원 판결 (피고들의 소 각하 청구를 대부분 수용, '23.10.30)</li> <li>사라 앤더슨의 Stability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외하고는 피고들의 소 각하 청구를 수용: 나머지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해당 원고들이 소 제기 전에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저작권 위반 주장을 하지 않음</li> <li>사라 앤더슨의 경우: 소 제기 전에 저작물 등록이 되어 있고 법원은 사라 앤더슨의 모든 저작물이 Stable Diffusion의 학습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봄</li> <li>법원은 DeviantArt DreamUp이 Stable Diffusion을 기반으로 하지만, DeviantArt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미지를 스크래핑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Midjourney의 경우 Midjourney의 Stable Diffusion 사용이 문제라는 것인지 아니면 Midjourney가 자신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법원은, 생성된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생적 저작물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저작물과 Stable Diffusion의 결과물이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li> <li>AI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특성상 권리자는 학습용 DB에 사용된 자신의 저작물을 일일이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침해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해당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저 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li> </ul>
2	GPL-2.0: 라이선스 경계문제와 컴플라이언스	<ul> <li>SW는 기능적 저작물이어서 많은 변수가 있음. 2차적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만으로는 경계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한계 있음</li> <li>2차적저작물 여부는 실질적 유사성과 창작성을 기준으로 원저작물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되 FSF의 기준들을 참고 가능</li> <li>GPL 계열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도 소스공개 등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계 밖에 있고 싶다면 FSF가명시적으로 밝힌 GPL이 적용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li> </ul>
3	SFC v. Vizio 소송 사례	<ul> <li>기존에 미국법에서는 소송은 저작권자(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아)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Vizio 의 경우는 제3자(SFC)가 제기한 케이스임</li> <li>경과: 캘리포니아 주법원 → 연방대법원 → 캘리포니아 주법원(SFC의 원고적격 인정)</li> <li>평가: Vizio가 소스코드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저작권 위반 대신 계약 위반으로 인정. 코드 공개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독립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 기업들은 예방할 필요성이 증가</li> <li>특이사항: Vizio가 원저작자들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을 시, 공개의무 없음. 그러나, 원저작자들이 다수인 점등 현 케이스에서는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ul>

## 주요 사례 (2)

No	주제	주요 논의내용
4	중국의 오픈소스 2차적저작물 소송판결 결과	<ul> <li>경우1: GPL-2.0 오픈소스를 개작한 2차적저작물을 상업화에 활용하였는데 이를 경쟁업체가 복제하여 또 다른 상업화에 이용했을 때         <ul> <li>✓ 사건 당사자가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침해 책임은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li> <li>✓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다루지 않음(계약 위반 및 권리 침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li> </ul> </li> <li>경우2: 개발결과물을 GPL-3.0으로 공개했는데 가져다 그것을 쓰면서 공개 안 할 경우 ✓ GPL-3.0 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인정), 원고적격 여부(인정), 저작권침해 여부(인정), 배상 판결</li> </ul>
5	LF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리포 트	• 컴플라이언스 도전 과제로 접근성, 투명성, 고급 기능세트, 확장성, 속도, 정확성, 감사가능성, AI 생성코드를 포함한 8가지 항목 제시
6	GPL-violations.org는 어떤 사항들을 문제삼 았나?	<ul> <li>Gpl-violations.org는 주로 B2C 제품에 소송을 걸고, 제조사 소재 국가, 오픈소스 보호가 강화된 국가, 저작 권법이 발달된 국가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향있음</li> <li>분석에 사용된 분석 보드와 오픈소스 바이너리 검증툴을 통해 주로 라이선스 위반사실 밝혀냄. 대부분 제품 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이 가능함</li> <li>오픈소스 원저작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함: Vizio 판결 이후, 위임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소송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li> <li>소송 종결 후 소스코드 공개한 기업의 매출을 분석해 보면, 코드 공개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지가 향후 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오픈소스의 전략적 활용 및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 기업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란 판단 (VMware의 경우는 매출증가함)</li> </ul>
7	GPL-2.0의 발전: GPL-3.0, AGPL-3.0	• (질문) 특허권은 기여자한테만 주어지는 것인가?

#### 향후 계획

- 제5차 회의(2024.6월)
  - ▶ (전문가초청) 국가별 오픈소스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
- 제6차 회의(2024.8월)
  - ▶ (소송사례) Jacobsen v. Katzer: 계약 위반과 저작권 위반 (현대모비스 김형진)
  - ▶ (주제발표) 도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이슈
- 제7차 회의(2024.10월)
  - ▶ (전문가초청) AI 관련 법적 이슈
- 제8차 회의(2024.12월)
  - ▶ (소송사례) Oracle v. Google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동의하는가?
  - ▶ (주제발표) 고지문,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나? (ETRI 신학철)
- 제9차 회의(2025.2월)
  - ▶ (소송사례) 숫자천당 v. 유자, 중국의 오픈소스 소송사례
  - ▶ (주제발표) 오픈소스 의존성 분석, 어디까지 해야 하나?



#### 논의사항

- 회의방식
  - ▶오프라인 v. (오프라인 & 온라인)
- 회의주기
  - ▶격월 (정기회의와 겹치는 경우 스케줄 조정)
- 회의장소
  - ▶ETRI 서울사무소 계속 활용 가능
  - ▶다른 방안: ETRI 대전 본원 또는 타 기관의 장소 제공 독려
- 발표자
  - ▶자원 방식
- 회의주제
  - ▶오는 10~11월 사이에 2025년 프로그램 정하기
  - ▶이슈 발굴 TF 가동

# 감사합니다

